

정 관

2021 개정

사단법인 정관

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함께동행하는사람들** ”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폐식용유 범국민 운동 홍보교육과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기금, 환경보호, 자원 확보, 환경정책 연구 등을 추진하고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탄소 배출권 획득 하고, 환경개선 홍보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존을 하기 위함이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법인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
- ② 필요한 경우 분 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1. 전라도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 녹색계몽운동
- ② 전국 행복한 교육박람회 개최 등 자원재활용 홍보 및 교육사업
- ③ 노인 등 소외 계층 봉사 및 복지개선사업
- ④ 법인사업 수행을 위한 폐식용유 수거 및 정제사업
- ⑤ 법정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선도사업
- ⑥ 이산화탄소 감축 및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연구사업
폐식용유 범국민 운동
- ⑧ 환경개선 홍보단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회원은 회비를 납입하여야 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법인의 행사 안내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 ③ 회원은 법인의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한다.
2. 법인의 행사 및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3. 회비 납부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사업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④ 불법을 행했을 때 이사회 의결에 의해 제명한다.
- ⑤ 회원이 타단체 등에 피해를 주었을 때 이사회 의결에 의해 제명한다.
- ⑥ 업체, 관공서, 타 단체 등에 로비 또는 금품을 요구했을 때 이사회 의결에 의해 제명한다.
- ⑦ 회원(대표이사, 임원, 분사무소장, 지회장, 직원)이 목적 사업을 태만이 이행했을 때 이사회 의결에 의해 제명한다.

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5인
4. 감사 1인

제10조(임원의 자격) ① 봉사와 근면 성실한 자.

- ② 사회에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자.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이사는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 할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 또는 태만이 하는 행위
4. 내부의 업무와 문서 정보 유출 시킬 때 총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해서 제명한다.
5. 영리 법인 또는 타 단체 등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총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해서 제명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이사는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이사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 및 실적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7. 분 사무소(또는 지회)의 모든 결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이행해야 하고 특별한 의결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 분 사무소(또는 지회)는 모든 결정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의결 정족수를 채워서 결정해야 한다.

제22조(의사록) 총회 및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 사항을 기재하고 의장(회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운영위원회

제25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이사와 사외 이사로 구성한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3명
4. 분야별 위원장 및 국, 부장 임명
5. 사업 계획 및 예산 수립, 부장 임명
6. 본 회의 운영 규칙 제정

7. 대상자 돕기에 관한 제반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지정기부금을 운영하는 상설의결 기구이다.
- ③ 운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분야별 위원장 및 국,부장 임명
 2.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중요사업 집행과 관련한 사항
 3. 본 회의 운영 규칙 제정
 4. 수급자 돕기에 관한 제반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리 임면과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6장 이사회

제27조(이사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이사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9. 분 사무소장, 지회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10. 분 사무소(또는 지회)의 모든 의결 사항

제30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7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기부금의 운영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⑤ 단체가 해산 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분 사무소, 지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분 사무소, 지회의 기본재산(중앙회 지원받은 재산)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받아야 한다.

제34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는 10,000원으로 정한다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판매 수익금)

제35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8장 사무부서

제40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1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최초 임원의 임기) 이 정관의 임원의 선임 및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 최초 임원의 임기는 불임과 같이 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